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7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8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3.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 폐기)

제1차 국방위원회(2026.4.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대식의원)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산업체·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문성환)

중소·중견 방산업체는 주로 방산물자의 소재·부품·장비를 체계업체(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재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인력을 고용해 방산혁신 분야 등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개정안은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방위산

업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다음의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는 고용 지원대상을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산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연구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중견·중소 방산업체의 기술혁신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사 입법례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의2를 참조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용하는 연구인력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 부칙에서는 ‘전문인력 고용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다만, 그간 개정안과 유사한 유효기간 입법례에서 기한을 두는 것이 형식적 일몰에 그치고 사실상 상시제도화됨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면 개정규정의 효력을 두지 않는 방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이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